

공 고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-1908호

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

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0. 30.
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
1. 열람기간: 2025. 10. 31.(금) ~ 11. 13.(목) (14일간)
2. 열람장소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거정비과(9층)
3. 의견제출: 방문 또는 우편(※열람 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4. 행위 제한 내용

가. 제한지역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380번지 일대, 121,830.6㎡

나. 제한기간: 고시일로부터 3년간(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)

※ 기간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, 사업이 취소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

다. 관련근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16조

라. 제한사유 :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

마. 제한대상

○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
-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
-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분할 등
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행위

○ 토지분할

바. 제한제외 대상

○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(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)
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
-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
-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

단,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

※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: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,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

5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6. 기타문의 : 금천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627-1564)